

기후정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기후정의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응해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신앙적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제2장 조직과 사업

제3조 (조직)

본 위원회는 아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공천 9인(여성 1인 이상)
2. 위원회 추천 2인(신학자, 전문가)
3. 기관 추천 4인 : 여신도회 1인, 남신도회 1인, 청년회 1인,
생태공동체운동본부 1인

제4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1.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 (사업)

1. 기후위기 대응과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창조신앙, 생태신학을 전파한다.

2. 기후위기 대응과 창조세계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실천을 독려하고 생태선교를 수행한다.
3. 생태선교를 위한 목회자료, 예배자료,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고, 생태감수성을 고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회의)

본 위원회는 총회 후 첫 번째 모임을 정기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은 소집 7일 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의)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생태공동체운동본부

제9조

본 위원회는 부여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태공동체운동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운동본부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하여 운영하며 시행세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개정 절차

제11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2월 제108회 총회 실행위원회 제정